

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재 명 인

2026년 9월 29일

국 무 총 리 한 성 숙

국 무 위 원
행 정 안 전 부
장 윤 호 중
(법무부 소관)

●법률 제22009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

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5조의12제6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“제260조제1항(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, 제261조(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”을 “제260조제1항, 제261조, 부칙 제15조제1항 및 부칙 제15조제9항·제19항·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(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부칙 제15조제23항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: 2026년 12월 10일

5. 부칙 제15조제60항에 따라 개정되는 「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(제220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)의 개정규정: 2027년 8월 5일

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종전의 수사권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.

1.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

2.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「검찰청법」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검찰청법」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「공소청법」에 따른 공소청 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 중 “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

등법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: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

2.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: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

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 제10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, 제36항, 제40항, 제42항, 제45항, 제47항, 제49항, 제51항, 제54항, 제55항 및 제58항부터 제60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4항, 제16항,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.

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, 제8항,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, 제15항, 제17항, 제18항,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및 제30항부터 제3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6항(중전의 제14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7항부터 제39항까지, 제41항, 제43항, 제44항 및 제4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7항(중전의 제18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9항(중전의 제19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1항(중전의 제20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2항, 제53항, 제56항 및 제5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0항(중전의 제25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검찰총장”을 “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, “자료”를 “자료(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3호 중 “법원”을 “법원 또는 검사”로 한다.

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의3제2항 전단 중 “검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사기관등”을 “수사기관등과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한다.

제53조의3제1항제2호 중 “검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, “감사기관”을 “감사기관과 공소청”으로, “중인 경우”를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 경우”로 한다.

⑦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2호”를 각각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”로 한다.

제44조제3항 후단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2호”를 각각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”로 한다.

⑧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3항 전단 중 “중이거나”를 “중(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이거나”로 한다.

⑩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9호 중 “총경(자치총경을 포함한다)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, 총경(자치총경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무부장관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)에게”를 “수사기관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군수사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“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”을 “수사기관”으로, “검사(檢事)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”를 “조사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“검사나 군검사의 조사”를 “조사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6항 본문 중 “법무부장관(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)에게”를 “수사기관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 중 “대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 본문 중 “제3호부터 제6호까지”를 “제3호부터 제6호까지, 제7호의2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제8호”를 “제7호의2·제8호”로 한다.

7의2.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

⑪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 중 “감사원과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한다.

⑫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감사원 및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⑬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의3제1항제6호 중 “감사원 및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78조의4제1항 중 “감사원과 검찰·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”으로, ““조사 및 수사기관””을 ““조사및수사기관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조사 및 수사기관”을 “조사및수사기관등”으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83조제2항 중 “검찰·경찰”을 “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감사원과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(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)”로, “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자료”를 “자료(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 한다.

제83조의2제2항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(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⑮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 중 “검찰, 경찰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한다.

⑰ 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각급 수사기관과”를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각급 수사기관과”로, “각급 수사기관은”을 “공소청 및 각급 수사기관은”으로 한다.

⑱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3항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수사기관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한다.

㉑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제1항제3호 중 “감사원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㉒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 중 “경찰, 검찰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 한다.

㉓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“감사원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“감사원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”으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59조의3제1항 중 “감사원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군검찰”을 “공소청과 군검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

인”으로 한다.

법률 제21765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3제4항 전단 중 “감사원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”으로, “조사·수사 자료”를 “조사·수사 자료(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감사원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㉔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 전단 중 “중이거나”를 “중(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이거나”로 한다.

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 본문 중 “검사와 근로감독관”을 “근로감독관”으로 한다.

㉖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4제4항제1호 중 “대검찰청차장검사·관세청차장·경찰청차장”을 “공소청차장검사·관세청차장·중대범죄수사청차장·경찰청차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4제2항제2호 중 “검찰, 경찰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과 중대범죄수사청, 경찰”로, “자료제공”을 “자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)제공”으로 한다.

㉗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2호”를 각각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”로 한다.

제54조제3항 후단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5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2호”를 각각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”로 한다.

제77조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㉘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 사항

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수사 중인 형사사건”을 “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”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 중 “각급 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4항 본문 중 “수사하고 처리”를 “처리”로 한다.

㉔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[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(제31조는 제외한다) 같다]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원”을 “법원, 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0조 중 “수사업무”를 “공소·수사 업무”로 한다.

제31조제3항 본문 중 “검찰청, 군사법원”을 “공소청, 군사법원”으로, “경찰관서”를 “중대범죄수사청, 경찰관서”로, “「검찰청법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공소청법」 제3조제1항”으로, “대검찰청, 고등검찰청, 지방검찰청, 지방검찰청 지청”을 “공소청, 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,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5조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·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36조의 제목 “(재판·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)”를 “(재판·수사기관 등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”을 “재판기관,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(이하 “재판·수사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수사”를 각각 “공소·수사”로 한다.

제89조의7제1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97조의2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97조의4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09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

㉕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제1항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수사기관”으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한다.

제61조제3항제3호 중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,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㉖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검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3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

제61조제1항 중 “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”을 “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”로 한다.

㉗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2호”를 각각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”로 한다.

제43조제3항 후단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2호”를 각각 “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”로 한다.

㉔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제1항제4호 중 “감사원 및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감사원과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감사원·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66조의3제1항 중 “감사원,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·경찰”을 “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66조의4제2항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(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㉕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7조제2항 본문 중 “오로지 검사(檢事)와 선원근로감독관”을 “선원근로감독관”으로 한다.

㉖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3항제1호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검사 및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호 중 “수사기관의 조사”를 “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”로 한다.

㉗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4항 중 “수사는 검사와”를 “수사는”으로 한다.

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수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 및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㉙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85조제4항 중 “검사, 사법경찰관리”를 “사법경찰관리”로 한다.

제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”을 “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”으로 한다.

④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8조의3제1항 중 “검찰총장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”를 “증권선물위원회는”으로, “소추하기”를 “검찰총장이 소추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하기”로 한다.

제426조의2제2항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“수사기관”을 각각 “공소청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429조의2제3항 중 “검찰총장”을 “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, “자료”를 “자료(공소제기 여부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④⑧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 중 “지방검찰청의 검사장”을 각각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검사”를 각각 “사법경찰관”으로 한다.

④⑨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의7제2항 전단 중 “검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[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]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검찰·경찰”을 “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 한다.

⑤⑩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3제1항제4호 중 “감사원 및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69조의4제1항 중 “감사원과 검찰·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 등”으로, ““조사 및 수사기관””을 ““조사및수사기관등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조사 및 수사기관”을 “조사및수사기관등”으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한다.

제73조제2항 중 “검찰·경찰”을 “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중인”을 “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감사원과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때(공소청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)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통보”를 “통보(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)”로, “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, “자료”를 “자료(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”을 “감사원,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 한다.

제73조의2제2항 중 “통보를”을 “통보(같은 항에 따른 공소제기 여부 결정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<51>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“검찰”을 “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때[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]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검찰·경찰”을 “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·경찰”로 한다.

<52>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범죄 수사”를 “범죄 수사(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사진행”을 “수사진행(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의4제3항제2호 본문 중 “범죄수사”를 “범죄수사(공소제기의 결정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 전단, 같은 조 제4항 전단·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수사기관”을 각각 “검사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29조의2제1항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검사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한다.

제85조제2항 단서 중 “지방검찰청 검사장(檢事長)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<53>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”을 “범죄경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검사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(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4항 전단 중 “제3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”를 “제32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, 같은 조 제8호”로 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<56>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사,”를 “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,”으로, “검찰총장”을 “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총장,”을 “검찰총장, 중대범죄수사청장,”으로 한다.

<57>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단서 중 “수사기관”을 “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제13조에서 같다) 또는 수사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사·공판 과정”을 “수사·공판 과정(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사건의 수사”를 “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지방검찰청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검사장”을 “지방공소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전단 중 “검사”를 “검사,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”으로,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, 중대범죄수

사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사”를 “검사·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지방검찰청”을 “지방공소청”으로 한다.

<60>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제200조의4”를 “제200조의4, 제220조의2, 제245조의12”로, “제266조의11 및 제294조의4”를 “제266조의11, 제294조의4 및 제294조의5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5제2호”를 “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5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(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부칙 제15조제1항,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개정되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73조의 개정규정, 부칙 제15조제19항 및 같은 조 제36항에 따라 개정되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② 부칙 제15조제25항, 같은 조 제39항, 같은 조 제43항 및 같은 조 제46항에 따라 개정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 및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,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「형사소송법」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,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,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.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